

요양원 현황

○ 장기요양기관 정보

장기요양기관명	효드림요양원	장기요양 기관 기호	1-11410-00210
기관 유형	노인요양시설	지정 일자	2016년 7월
전화번호	02-3151-0490	FAX 번호	02-3151-0491
홈페이지	다음카페/효드림요양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응암로6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소유현황	자가

○ 시설현황

침실 (생활실)				특별 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요양 보호사실	프로 그램실	사무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탕비실 및 세탁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1	1	1	1	1	8	3	3
	5	5	1								

○ 종사자 근무체계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구분	총원	시설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계약) 의사
인원	20명	1	2	2	14	.	1
보유 자격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위탁	내과 (의사면허증)

[주·야간, 평·휴일 직원인력]

- 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등)에 의거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야간에는 야간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 ② 장기요양 기관의 특성상 평·휴일에 구분 없이 근무 상황표에 따라 24시간 운영합니다.

○ 시설급여 비용

급여 비용	세부 내용	산출 근거	금액
음식 재료비	식비 / 간식비	(식비)3,800원×3회 (간식1일)1,500원	일 12,900원
경관영양유동식	처방 및 진료에 따름	실비	실비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30일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일당 비용	93,070원	86,340원	81,540원
비급여(식재료비+간식비)	387,000원	387,000원	387,000원
본인부담금 (8%)	610,380원	594,210원	582,690원
본인부담금 (12%)	722,040원	697,830원	680,550원
본인부담금 (20%)	945,420원	905,040원	876,240원

○ 시설의 규모,설비

시설의 규모	시설의 대지면적: m ² , 시설의 연면적: m ²
시설의 설비	- 소화설비: 소화기구, 스프링쿨러 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 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운영 규정의 개요

○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가. 본 계약에 대해서 양자 간의 이의가 없을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합니다.
(단, 쌍방 간에 이의가 있을 때 계약만료 전에 계약 변경의 필요성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보호자는 입소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지키며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가. 입소(이용자는 지켜야 할 제반 규칙을 충실히 준수합니다.)

나.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시 통보를 해주어야 하며, 장기출장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시설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다.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훼손했을 때는 보호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합니다.

3. 입소(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퇴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나.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전염병 등)이 있는 경우

다. 입소비용(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계속 연체할 경우

라. 기타 운영자가 요양원 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퇴소를 명하는 경우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1.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본 기관은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며 다용도로 사용 등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중환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시설의 지정병원 또는 보호자의 선택에 의거 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기타정보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요양 급여제공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